

#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16
----------	----

## 1. 개정이유

- 대형점 출현으로 위기감을 맞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. 1. 26. 「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」이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정 공포되어
- 자치단체 또는 상인회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래시장 골목(도로)에 전천후 시설인 비가리개 등(아케이드)을 설치하거나 설치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시에서도 중앙식료시장에 설치 계획 중에 있어
- 비가리개 시설을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

## 2. 개정내용

- 가설건축물 추가 지정(안 제8조)
  - 차양시설·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[시장이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·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(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.)에 설치하는 것]

## 3. 검토의견

- 판매장의 대형화, 고급화 추세에 기존의 재래시장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「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」이 2002. 1. 26 제정 공포됨에,
-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상인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래시장 골목(도로)에 전천후 시설인 비가리개 등을 설치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하여
- 이에 대하여 비가리개 시설을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